

공고 제2021-39호

- 경주엑스포대공원 -
푸드트럭 운영자 공모

경주엑스포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7월 19일

(재)문화엑스포 이사장

1. 모집개요

- 가. 모집내용 :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
- 나. 모집규모 : 푸드트럭 0 대 (차량대수는 공모자가 제안)
- 다. 장 소 :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매점 인근
- 라. 운영일 : 11일간 【2021년 7월 31일(토) ~ 8월 29일(일) 중 토, 일, 대체공휴일】
- 마. 운영시간 : 11:00 ~ 23:00 (협의 후 조정가능)
- 바. 사용료(1대기준) : 24,200원 × 11일 = 266,200원
- 사. 전기 등 공과금 별도 납부

2. 신청방법

- 가. 신청기간 : 2021. 7. 19(월) ~ 7. 25(일), 7일간
- 나. 신청자격
 - 푸드트럭 조합 또는 단체로서 차량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자

다. 신청방법 :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방문, 이메일, 우편으로 신청
라. 제출서류

- 응모시 : 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계약후 : 한시적 영업신고증 사본 1부,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 1부

마. 서류접수 : (재)문화엑스포 지원협력팀(방문, 우편, E-mail)

- 주 소 : [38118]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
- 전 화 : 054-740-3052
- E-mail : (gow4861@cexpo.or.kr)

※ 우편 및 E-mail 접수분은 마감 전 도착분에 한하며,
반드시 도착유무를 유선확인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
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
3. 선정방법

가. 선정일자 : 2021. 7월 26일 / 개별통보

나. 심사방법 : 신청서(제안서)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

4. 응모자 유의사항

가. 운영자는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
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코로나 방역지침을 이행하여야 함

나.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
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
응모자에게 있음.

다.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
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(사업의 타당성 등), 기타 응모에 관한
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해야 하며,
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
라. 기존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영업시설의 판매메뉴를 감안하여 푸드
트럭의 판매음식과 메뉴를 조정할 수 있음

- 마. 응모자는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입점허가가 취소되며, 향후 (재)문화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음.
 - 제3자에게 양도,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
 -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
- 바. 응모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,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, 권리금,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.
- 사. 응모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, 운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응모자가 책임짐. (푸드트럭 내 소화기 반드시 비치)
- 아.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.
- 자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(재)문화엑스포 해석에 의합니다.

5. 입점자 유의사항

- 가.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함.
- 나.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.
- 다.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.
- 라.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,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함.
- 마. 식재료 원산지 표기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.
- 바.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준수하여야 함.
- 사. 경주시가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, 일반봉투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
- 아. 입점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입점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.
- 자. 입점자는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함.